

2024년 정간사 본부 연석 회의록 (12월)

일 시	2024년 12월 14일(토) 10:00 - 13:00	장 소	대전역 애트3																																																																																																			
참석자	<p><정간사> 김기용, 김가을, 김만호, 김상태, 김진실, 박세철, 방호동, 신인후, 이거라, 아사찬, 이우영, 전경자, 조숙형, 최남윤</p> <p><본부 국장 및 팀장> 김문철, 김은경, 김선배, 박진경, 임효빈</p>																																																																																																					
결정사항	<p>1. 2025년 예산안 심의 (제안자 : 박진경 재정팀장)</p> <p>가. 2025년 예상 수입 450,000,000원 (2024년 413,09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템북 후원금 중단 예정 - 개인 후원금은 소폭 늘었으나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인건비와 물가, 환율 상승으로 2025년에도 재정적 어려움 예상됨 <p>나. 어려운 재정 마련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1> 월급 호봉이 오르고 있음에도 개인후원금의 비율이 제대로 오르지 않음 - 개인 후원 독려 (예: 1만원 증액후원운동) 필요, 수련회와 지역 별무리 시간을 통해 이를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금액별 현황보고 (11월기준 569명)</p> <table border="1" data-bbox="359 1176 1484 1668"> <thead> <tr> <th colspan="3">5만원이하(70%)</th> <th colspan="3">12만원이하(18%)</th> <th colspan="3">12만원이상(12%)</th> </tr> <tr> <th>후원금액</th> <th>인원(명)</th> <th>비율(%)</th> <th>후원금액</th> <th>인원(명)</th> <th>비율(%)</th> <th>후원금액</th> <th>인원(명)</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5,000</td> <td>1</td> <td>0%</td> <td>60,000</td> <td>1</td> <td>0%</td> <td>130,000</td> <td>2</td> <td>0%</td> </tr> <tr> <td>10,000</td> <td>94</td> <td>17%</td> <td>70,000</td> <td>5</td> <td>1%</td> <td>150,000</td> <td>32</td> <td>6%</td> </tr> <tr> <td>20,000</td> <td>56</td> <td>10%</td> <td>80,000</td> <td>2</td> <td>0%</td> <td>160,000</td> <td>2</td> <td>0%</td> </tr> <tr> <td>25,000</td> <td>1</td> <td>0%</td> <td>90,000</td> <td>1</td> <td>0%</td> <td>180,000</td> <td>7</td> <td>1%</td> </tr> <tr> <td>30,000</td> <td>147</td> <td>26%</td> <td>100,000</td> <td>80</td> <td>14%</td> <td>198,500</td> <td>1</td> <td>0%</td> </tr> <tr> <td>40,000</td> <td>6</td> <td>1%</td> <td>110,000</td> <td>3</td> <td>1%</td> <td>200,000</td> <td>17</td> <td>3%</td> </tr> <tr> <td>50,000</td> <td>98</td> <td>17%</td> <td>120,000</td> <td>8</td> <td>1%</td> <td>250,000</td> <td>3</td> <td>1%</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70,000</td> <td>1</td> <td>0%</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300,000</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p>- 결정 : <붙임 1>의 예산안대로 결정함.</p> <p><붙임 1: 2024 교사선교회 예산 요약서></p> <p>2. 2025년 인사안 심의 (제안자 : 김만호 대표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 그대로 임명하기로 함. <p><붙임 2: 2025년 신입 사역자 명단></p>			5만원이하(70%)			12만원이하(18%)			12만원이상(12%)			후원금액	인원(명)	비율(%)	후원금액	인원(명)	비율(%)	후원금액	인원(명)	비율(%)	5,000	1	0%	60,000	1	0%	130,000	2	0%	10,000	94	17%	70,000	5	1%	150,000	32	6%	20,000	56	10%	80,000	2	0%	160,000	2	0%	25,000	1	0%	90,000	1	0%	180,000	7	1%	30,000	147	26%	100,000	80	14%	198,500	1	0%	40,000	6	1%	110,000	3	1%	200,000	17	3%	50,000	98	17%	120,000	8	1%	250,000	3	1%							270,000	1	0%							300,000	1	0%
5만원이하(70%)			12만원이하(18%)			12만원이상(12%)																																																																																																
후원금액	인원(명)	비율(%)	후원금액	인원(명)	비율(%)	후원금액	인원(명)	비율(%)																																																																																														
5,000	1	0%	60,000	1	0%	130,000	2	0%																																																																																														
10,000	94	17%	70,000	5	1%	150,000	32	6%																																																																																														
20,000	56	10%	80,000	2	0%	160,000	2	0%																																																																																														
25,000	1	0%	90,000	1	0%	180,000	7	1%																																																																																														
30,000	147	26%	100,000	80	14%	198,500	1	0%																																																																																														
40,000	6	1%	110,000	3	1%	200,000	17	3%																																																																																														
50,000	98	17%	120,000	8	1%	250,000	3	1%																																																																																														
						270,000	1	0%																																																																																														
						300,000	1	0%																																																																																														

기타
안건

1.수련회 준비 상황 안내 (제안자 : 황운기)

- 가. 남성 GBS리더가 부족한 상황, 권역별로 필요 인원 할당 예정
- 나. 저녁기도회, 대표기도는 사역을 내려놓는 간사님께 먼저 의뢰

2. 내규 및 연혁 등 수정 의견 수렴 (제안자 : 박세철)

- 가. 교사선교회 정관과 내규를 전체적으로 살피며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함. 따라서 추후 따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나. 연혁에 2025년 신임 대표간사 추가 기재
- 다. 내규 수정 안 중 '회원가입 방법 안내'에 지역(캠퍼스) 간사 추천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별무리 참여 정도, 이단 여부 등 면밀히 살핀 후에 회원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라. 내규 수정 안 중 '파송원칙'에서 2항, 6항의 의미는 단순한 별무리 회원이 아닌 그 의무까지 다하는 회원이 파송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 그렇지 않으면 선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나 여러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임.

<붙임 3: 교사선교회 규정-파란 글씨가 개정안>

<붙임 1 : 2025 교사선교회 예산 요약서>

< 2025 교사선교회 예산 요약서 >

1. 수입 예산

(단위: 원)

수입				
계정코드	계정과목	적요	금액	특기 사항
4200000	후원금	개인후원금	450,000,000원	월: 37,500,000원*12개월
합계			450,000,000원	-

2. 지출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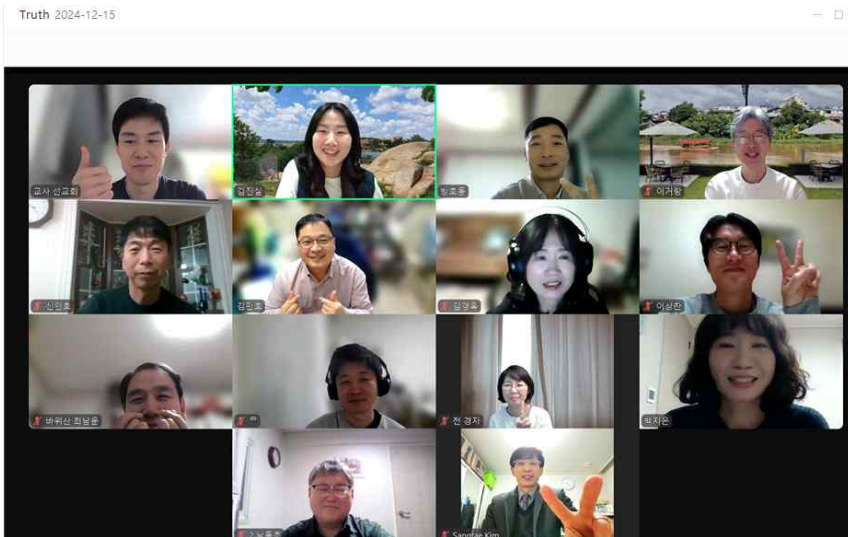
(단위: 원)

지출									
과목	적요	2024 예산	2025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월 예산	특기사항			
인	지역 사역비	79,800,000	83,200,000	4.3	6,930,000	38개 지역 (19 %)			
	캠퍼스 사역비	45,480,000	46,560,000	2.4	3,880,000	10개 캠퍼스			
	총액(A)	125,280,000	129,760,000	3.6	전체 재정의 (28.83 %)				
	사	해외 선교사	66,348,000	77,160,000	16.3	환율: 1,407.5	이보아스: 월 2,216,000(90%+개인후원) 1750\$ 퇴직금을 위한 적금(9년) 월50만원		
			0	3,600,000	100.0		300,000	해외협력선교사 가정	
			필리핀선교센터	3,600,000	3,600,000		0.0	300,000	필리핀 선교센터 운영 지원비
			대표 간사	6,000,000	6,000,000		0.0	500,000	대표 간사
			사무 간사	13,200,000	14,400,000		9.1	1,200,000	사무간사 (급여+4대보험+퇴직적립)
	대외 협력	1,200,000	1,200,000	0.0	100,000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 파견	27,600,000	28,200,000	2.2	2,350,000	비전연구소장 (월 235만원*12개월)			
총액(B)	90,348,000	134,160,000	48.5	전체 재정의 (29.81%)					
비	특별 지원1(운영)	69,000,000	77,000,000	11.6	-	수련회: 년 24,000,000 디모데 캠프: 년 20,000,000 토요학교: 년 15,000,000 센터관리: 년 10,000,000 선교사향공료: 년 8,000,000			
		1,200,000	0			교원대훈련관 종료			
		1,800,000	1,800,000	0.0	150,000원	대구교대 훈련관 지원 (월15만원)			
		예비비	7,932,000	8,640,000	8.9				
		총액(C)	79,932,000	87,440,000	9.4	전체 재정의 (19.49%)			
사무국	기획팀	9,000,000	7,000,000	-22.2	-	체육대회			
		재정팀	11,740,000	10,540,000	-10.2	-			
		미디어팀	1,300,000	1,300,000	0.0	-			
		문서사역팀	4,500,000	6,500,000	44.4	-	기독교사대회 홍보 및 선교회 팸플릿 제작비		
		복돋움팀		7,000,000	100.0		차기사역자 복돋움		
	총액(D)	101,972,000	32,340,000	-68.3	전체 재정의 (7.18 %)				
	교사국	11,800,000	12,300,000	4.2	-				
	제자국	4,500,000	3,000,000	-33.3	-				
	예비교사국	9,000,000	10,000,000	11.1	-				
	교육국	2,000,000	2,000,000	0.0	-				
해외선교국	10,000,000	11,000,000	10.0	-					
TEM연구소	6,000,000	6,500,000	8.3	-					
정간사회	8,000,000	10,500,000	31.3	-					
총액(E)	139,272,000	55,300,000	23.7	전체 재정의 (12.29%)					
자산	적금	31,000,000	11,000,000	-64.5		*적금1: 목적사업적립 (24년 3100만원+5백) *적금2: 북한선교(월50만원) 24.11.30 850만원			
	총액(F)	31,000,000	11,000,000	-64.5	전체 재정의 (2.4) %				
총액(A+B+C+D+E+F)		432,000,000	450,000,00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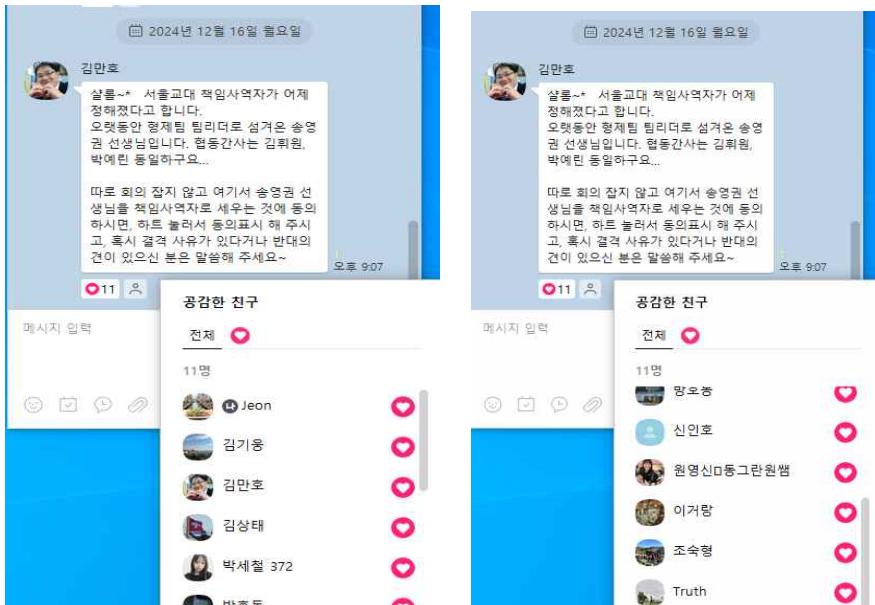
<붙임 2 : 2025 신입사역자 명단>

구분		2024년 사역자	2025년 사역자	비고
본부	교육국장	김재현	조속형	
	제자국장	김은경	홍주영	
지역	서울강동	.	이주현	
	서울동북	김잔디	정단희	
	부천	김진실	장은희	
	부산서부	서은경	서동민	
캠퍼스	한국교원대	황유진	전누리	
정간사			백지은	2024. 12. 15. 중 인터뷰 후 신입정간사로 임명하기로 함.
캠퍼스	서울교대	황지혜	송영권	2024. 12. 16. 추가 변경안이 정간사 SNS를 통해 결정

<정간사 줌인터뷰- 백지은 후보/ 2024.12.15.>



<정간사 SNS의결상황 캡처본/ 2024.12.16.>



인사원칙

2025년 1월 22일 개정

1. 회원

1) 가입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지역(캠퍼스) 간사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총회에서 입회를 승인한다.

2) 권리와 의무

회원은 헌금에 동참할 의무 및 기타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실 수령액의 5% 또는 구좌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3) 탈퇴

회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 시에는 본부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4) 제명

회원으로서는 본 회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본 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간사회 의결을 거쳐 본 회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2. 정간사(정간사회)

※ 정간사(정간사회)는 선교회 내부 명칭이며, 대외적 명칭은 이사(이사회)로 한다.

1) 역할

-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한다.
-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세워 나간다.
- 본 회의 대표 및 본부간사, 책임간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사단법인 교사선교회 규정집'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 구성

회원 수의 5%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수는 헌금 동참자의 수를 근거로 산정한다.

3) 선임 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

- 양육에 있어 3대의 열매를 경험한 자
- 본회의 주 사역(본부 각 국 사역, 지역, 캠퍼스)을 책임간사 및 협동간사(팀장)로 7년 이상 섬긴 경험이 있는 자
- 무장과정을 통과한 자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자
- 본회에서 영적, 사회적으로 덕망이 두텁다고 인정되는 자

4) 임기

정간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단,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만 62세이다.).

5) 휴무

해외 이주, 건강 이상 또는 정간사회에서 인정된 사유 발생 시 휴무정간사로 전환되며, 휴무 사유가 종료될 경우, 정간사의 직무를 재개한다.

6) 해임

본인의 의사 및 본 회 정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7) 사임

임기 종료 이전에, 본 회의 정간사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3. 등기 이사

1) 역할

- 사단법인 교사선교회 법인관련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별무리 학교 이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2) 구성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3) 선임 자격

정간사 및 퇴임한 정간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임기

정년의 한계를 두지 않으나, 70세 이후에는 건강 여부를 고려한다.

5) 해임

본인의 의사 및 본 회 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4. 대표

1) 역할

- 대외 관계에 있어 본회를 대표한다.
- 정간사회 결의에 따라 본부 간사 및 책임 간사를 임명한다.
- 예산 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 본회의 모든 사역을 조정하고 총괄한다.
- 정간사회 안건을 기안하고 정간사회를 진행한다.

2) 선임 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

- 본 회의 정간사로 섬기고 있는 자.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자.
- 본회에서 영적, 인격적, 사회적으로 덕망이 두텁다고 인정되는 자.

3) 임기

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최대 6년까지).

4) 해임

본인의 의사 및 본 회 대표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5. 본부 간사

1) 역할

- 각 국 사역을 총괄한다.
- 대표를 도와 지역 및 캠퍼스, 디모데, 본부 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필요에 따라 팀장을 선임하여 동역할 수 있다. (팀장 선임 자격 : 훈련 과정 이상 수료자)
- 국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선임 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

- 훈련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 국별, 팀별 사역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임기

임기는 4년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4) 해임

본인의 의사 및 본부 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6. 지역 간사

1) 역할

- 지역의 책임 사역자로서 지역 사역을 총괄 한다.
- 지역 형편에 맞게 임원단 및 협동간사를 세워서 동역할 수 있다. (협동간사 선임 자격 : 훈련과정 이상 수료자)
- 지역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본부 사무국(재정팀)에 보고 한다.

2) 선임 자격

-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
- 본 회의 가치와 사명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
-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특별한 경우, 정간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지역공동체에서 영적,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3) 임기

임기는 3년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4) 해임

본인의 의사 및 지역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시,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7. 캠퍼스 간사

1) 역할

- 캠퍼스의 책임사역자로 캠퍼스 사역을 총괄한다.
- 캠퍼스 형편에 맞게 임원단 및 협동간사를 세워 동역할 수 있다. (협동간사 선임 자격 : 훈련과정 이상 수료자)
- 캠퍼스 예산안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본부 사무국(재정팀)에 보고한다.

2) 선임 자격

-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
- 양육에 있어 3대의 열매를 경험한 자(특별한 경우, 정간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본 회의 가치와 사명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
- 훈련과정과 캠퍼스 간사징모과정을 수료한 자
- 지역공동체에서 영적,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3) 임기

임기는 3년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4) 해임

본인의 의사 및 지역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시,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재정원칙

2025년 1월 22일 개정

1. 방침

- 1)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선교회 회원이 헌금하여 재정을 운영한다.
- 2)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사선교회 존립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한다.
- 3) 정간사회는 재정운영원칙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한다.
- 4)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의 주체는 본부 및 각 지역·캠퍼스 간사이며,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
- 5) 회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입

- 1) 헌금자는 교사선교회 회원인 교사, 예비교사, 제자 그리고 기타 후원자들이다.
- 2) 회원들에게는 5% 헌금 또는 구좌제로 약정하여 헌금한다.
- 3) 모든 헌금은 선교회 전체 계좌로 입금하며, 재정팀장은 매월 헌금자의 명단과 각 지역의 헌금 총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4) 예비교사 및 제자들의 헌금은 각 캠퍼스와 제자들 모임에서 관리되며, 헌금자 명단과 총액을 홈페이지 캠퍼스 및 제자 모임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3. 지출

- 1) 지역 사역비는 전체 재정의 25% 내외로 지출한다(단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캠퍼스, 본부 사역비는 심의·의결된 예산안에 근거해 지출한다.

- 3)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장학금 및 지원금 등)은 정간사회의 결정을 통해 지출할 수 있다.
- 4) 지역 및 캠퍼스 재정 담당자는 회기 마지막 달인 2월 28일까지 결산내용을 본부 사무국 재정팀장에게 제출한다.
- 5) 선교회 각 기관에서는 사역활동 중 원거리 이동으로 교통비가 발생할 경우 대중교통 실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각종 회의(정간사회회, 국장회의, 국별회의, 권역별회의, 지역회의 등) 교통비는 회의 주관 기관에서 지출한다.
 - 간사리트릿(대면) 교통비는 간사가 소속된 지역 별무리에서 지출한다.
 - 타지역 방문 사역(설교, 강의, 봉사) 교통비는 요청지역 또는 소속 기관(국, 팀, 지역)에서 지출한다.
 - 교사국에서는 양육특별지원비 신청을 받아 원거리 양육사역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 지원 금액은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기관(국, 팀, 지역)에서 정한 지출 방침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4. 지역

각 지역에서는 지역 재정사용원칙을 정하여 운영하되 다음을 참고한다.

- 전체 모임 운영비: 장소사용료, 식비, 자료비, 강사료(어린이 보육교사 임금)
- 행사비: 작은 별 잔치, 지역교사 초청 잔치(양육사례발표 등)
- 기자재 구입비(빔프로젝터 등)
- 양육교재구입비
- 디모데 및 제자 관리비
- 제자 및 예비교사 장학금(등록금의 50%)
- 지역특색 사업을 위한 적립 등

5. 캠퍼스

- 1) 캠퍼스 사역비는 본부에서 지원한다.
- 2) 각 캠퍼스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관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은 본부 사무국(재정팀)에서 관리하며 운영상황 및 신설,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교사국장이 관리한다.
- 3)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금은 본부 사무국(재정팀)으로 즉시 반환한다.

6. 기타

- 1) 회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금 모금은 정간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 2) 위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재정 관련 사항은 정간사회의 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3)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간사회회의 결정을 통해 집행한다.

파송 원칙

2025년 1월 22일 개정

1. 파송에 대한 결정

- 1) 파송은 장기선교사(교육선교사, 선교사), 단기선교사, 전임사역자로 구분한다.
- 2) 파송선교사는 **교사선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양육, 별무리 참석, 회비 등)를 다하는 사람으로 무장과정 이상의 양육과정과 교사선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을 마쳐야 한다.**
- 3) 파송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출국 시 신변안전과 관련된 서약서를 본부 해외선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파송은 정간사회에서 결정한다.
- 5) 파송선교사는 교사선교회 내외에서 후원자를 확보하여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확보한다.
- 6) **교사선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훈련과정 이상의 양육과정과 교사선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을 마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협력선교사를 세울 수 있다.**

2. 선교 후원금에 대한 이해와 사용지침

- 1) 선교후원금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다.
- 2) 필요한 재정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뢰하지 않는다.
- 3)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한다.
- 4) 파송선교사는 선교지의 실정에 맞게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인다.
- 5) 파송선교사는 물질 사용에 있어 선한 청지기로서의 분별력과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선교 후원금 모금

- 1) 파송선교사와 선교사역의 필요에 따라 재정적 후원을 진행한다.
- 2) 선교지에서 필요한 재정은 교사선교회 후원금과 개인후원금을 통해 확보한다.
- 3) 파송 선교사는 선교회 회원 및 지인, 교회로부터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
- 4) 파송선교사가 소속된 지역과 개인후원자들은 약정한 선교기간 동안 재정 및 기도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선교사 지원 기준액

- 1) 각 지역 후원 기준액 (단위: 미국 달러)

구 분	1지역 (중국, 터키)		2지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3지역 (한국, 미국, 독일)	
	기준액	실지금액(50%)	기준액	실지금액(50%)	기준액	실지금액(50%)
독신	1100	550	1300	650	1500	750
가정(부부)	1500	750	1750	875	1950	975
가정(자녀1)	1750	875	1950	975	2150	1,075
가정(자녀2)	1950	975	2150	1,075	2400	1,200
가정(자녀3 이상)	2200	1,100	2400	1,200	2600	1,300

* 지역 구분은 국가 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동일 국가 내에서도 주변 환경과 물가 등 선교지 현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2) 선교사 지원 기준액은 교사선교회에서 회기년도 시작 달(1월) 기준 달러 환율에 근거하여 원화로 지원한다.
- 3) 선교사 구분에 따른 교사선교회 지원 비율 이외 후원금은 개인후원자와 교회 등의 후원을 통해 모금하도록 한다.
 - 단기선교사는 선교사 지원 기준액의 50%를 교사선교회에서 지원하며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채용으로 인한 급여 수령 시 기준액의 40% 이내에서 지원하며, 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령 시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기선교사는 선교사 지원 기준액의 90%를 교사선교회에서 지원하며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령 시 6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협력선교사는 매월 30만원(개인, 가정 동일)을 지원할 수 있다.**
- 4) 선교사 자녀 지원 기준은 만25세 이하의 학업 중인 자녀로 한다.

5. 장기 선교사 관리

- 1) 자격
 - 장기선교사(5년 이상) 파송은 무장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그에 준한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선교사 관리 원칙에 동의하는 자에 한한다.
- 2) 방침
 - **교사선교회와 후원관리자들에게 연말에 재정보고를 포함한 사역보고를 한다.**
 - 장기선교사는 안식년 및 사역종료 후를 대비한다. 선교후원금 중 초과 모금액은 적립하는 것을 지향한다.
 - 기도후원자 및 재정후원자 관리를 위한 모든 행정비용은 모금액에서 지출한다.
 - 장기선교사는 선교회 회원 외에 교회 및 기타후원자 모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교사선교회는 선교사의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장기선교사 후원은 후원 기준액의 90%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선교사의 은퇴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한다.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협력 선교사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 선교회는 장기선교사를 케어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은퇴 준비를 돕는다.

6. 단기 선교사 관리

- 1) 자격
 - **무장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그에 준한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한 자**
 - 타문화를 이해하고 교육선교에 관심을 갖는 자
 - 재정 및 기도후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
 - 교직을 정지하고 단기간의 교사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
 -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선교사 관리원칙에 동의하는 자
- 2) 방침
 - **교사선교회와 개인후원자들에게 연말에 재정보고를 포함한 사역보고를 한다.**
 - 기타 내용은 본부 결정에 따른다.

7. 선교비 사용

- 1) 선교사는 본인 명의 통장을 하나만 개설한다.
- 2) 출국 전에 후원관리자에게 도장과 개설한 통장, 현금카드를 제출하고 이를 본부 해외선교 국장에게 보고한다.
- 3)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하여 개인 구좌를 개설하고 이를 본부 사무국 재정팀장과 후원관리자에게 공지한다.
- 4) 후원관리자는 매월 정한 일자에 맞추어 선교비를 송금한다.
- 5) 선교비는 선교사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
- 6) 사역과 직결된 장비구입이나 특별사업 시행을 위해서 국내 개인구좌 비축금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선교국장과 개인후원관리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전 동의를 거친 사항이어야 한다.

8. 단기 선교팀 관리

- 1) 자격: 교사는 확립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예비교사는 PLTC를 수료한 자.
- 2) 방침
 - 단기 선교팀 사역은 기획단계에서 해외선교국장 및 대표간사와 협의하여 진행여부(날짜, 인원, 나라 등)를 결정한다.
 - 한글학교, MK CAMP, 홈스쿨링, 현지 교사 교육, 가정교육 세미나, 캠퍼스 아웃리치 등 교사선교회와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9. 전임 사역자 관리

- 1) 자격
 - 훈련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그에 준한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한 자
 - 교사선교회의 비전성취를 위해 전임사역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
 - 교직을 정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임사역에 헌신한 자
 -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국내 사역자 관리 원칙에 동의하는 자
- 2) 방침

교직에 재직 중인 국내 사역자의 전임사역은 3년 이내, 단기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3) 지원

국내 사역자 지원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단, 연금 수령자는 기준액의 30%, 미 수령자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한다.

(단위: 천원)

구분 비율	독신		가정(부부)		가정(자녀1)		가정(자녀2)		가정(자녀3 이상)	
	지원	100%	30%	100%	30%	100%	30%	100%	30%	100%
지원액	1,650	495	2,150	645	2,350	705	2,650	795	2,850	855

*유관기관과 연계된 전임사역은 실제 지원금(교사선교회+유관기관)이 지원금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 원칙은 별무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건물에 대한 명칭은 별무리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센터 소재지)

센터는 충청남도 남일면 별무리 1길 3 에 소재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 교사선교회 고유 사역 수행
2. 별무리교회, 별무리마을, 별무리 학교 공동 사용
3. 타 단체 및 기관, 지역주민에게 대여

제 2 장 센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자)

1. 센터 운영 및 관리는 교사선교회 사무국 재정팀장이 맡는다.
2.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유급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센터 운영)

1.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결정을 위하여 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2. 센터운영협의회는 교사선교회 사무국 재정팀장이 주관한다.
3. 센터운영협의회 구성은 교사선교회, 별무리교회, 별무리마을, 별무리학교 대표자로 한다.
4. 센터운영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제7조 (센터 사용 원칙)

1. 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2주일 전에 사무국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사선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온라인 신청 원칙: 창구의 일원화).
2. 각 사용 주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 주중(학기중 월요일~금요일 20:00)에는 학교 중심, 주말(금요일 20:00~토요일)에는 선교회 중심, 주일에는 교회 중심, 주중(월요일~금요일 20:00~22:00)에는 마을 중심으로 활용한다.
3.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시설 사용료 부과)

1. 센터 제반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은 센터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에 따른다.

제9조 (시설 관리)

1. 전기 안전 관리지를 선임하여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금강전기와 계약).
2. 청소 및 정리는 사용한 주체가 책임진다.
3. 센터 이용 시 발생한 하자는 사용 주체가 원래대로 복구한다.

제10조 (수입지출 보고)

1. 센터운영팀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연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교사선교회 정간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사용료) 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와 관련 된 사항은 별도 요율에 따른다.

제 3조 (게스트하우스 운영) '별무리 게스트하우스'는 별무리센터의 부속 시설로써 별도의 운영 원칙과 사용료에 관한 요율을 정하여 운영한다.